유아의 삶이 자라나는 행.복.놀.이.터. 다솔유치원

2025학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2025. 03.

공립단설 다솔유치원 since 2014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목적

가. 근거: 우리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유아교육법」,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나. 설치목적

1)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범죄 예방

2) 유아의 아동학대·안전사고 예방 및 확인

2.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책임관) 및 담당자(접근 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담당자 지정	성명	직위(급)	담당 부서	연락처
관리책임자(책임관)	우태안	원장		031-968-5296
운영담당자(접근 권한자)	박은진	교사	정보환경부	
시설담당자(접근 권한자)	하선혜	행정실장	행정실	031-968-5294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총 21대)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2대	현관 안
1대	현관 밖
2대	주차장 안
1대	버스 승하차 장소
1대	땅뜰
1대	하늘뜰
1대	1층 복도
1대	1층 급식실 앞 복도 및 계단
1대	1층 땅뜰 출입구
2대	강당
2대	3층 복도
2대	2층 복도
4대	1학년 교실 (비공개공간 이용 정보주체 총 51명 중 운영 동의 41명 반대 10명으로 미운영)

4.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

촬영 시간	24시간
보관 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보관 장소	방송실
처리 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 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 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함

5.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기준 및 열람 범위

개인정보의 열람 기준은 설치 목적에 따라 적용되며, 열람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영상정보 보관 기간(촬영일로부터 30일)내에 준합니다.

설치 목적	열람기준	열람 범위	유의사항
안전 사고 확인	유아의 안전사고	해당 사고 발생 시간 분량	
	정보 주체 간 분쟁이 안전사고(상해 등)로 이어진 경우	분쟁 발생 전후	•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모든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
아동학대 의심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유치원 내 학대를 의심	의심되는 상황	• 학대 의심 개연성이 있다면 유치원에서도 즉시 수사기관(112)에 신고한 후 가급적 수사기관과 함께 열람할 것을 권장
	수사나 재판 목적	요청물량	
설치 목적에 없음	유치원장이 결정 (정보 주체의 자기 정보 열람권 보장이 필요한 범위 내)	유치원장이 결정 (유아교육 및 유치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 다른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는 보호처리 ※ 보호 처리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다른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제3자 제공 동의 필요

6.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 주체(교직원 및 학부모)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 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위 사안으로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확인 방법	신청자와 함께 유치원 관계자(영상정보관리책임자와 담당자, 담임교사), 필요 시 유치원 운영위원 등이 함께 참석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상황을 파악한다.
확인 장소	방송실 (여건에 따라 지정 가능)

8. 영상정보의 제 3자 제공 시 조치 방법

개인영상정보는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제 3자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됩니다.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 조항에 따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별도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 제공, 파기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9.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계획은 2025년 3월 4일에 수립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제1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운영을 위한 사전의견수렴 및 개인영상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본 유치원에서는 유아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유치원,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보호자와 소통하는 유치원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내·외 공간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이하'법')따라 정보주체(유아의 법정대리인, 교직원 등)로부터 개인영상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시고 동의 여부를 표시해 주세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 운영 동의서

1. 설치 목적: 유아의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 증거확보
2. 설치된 장소: 하늘뜰 1대, 땅뜰 1대, 땅뜰 출입구 1대, 주차장 2대, 현관 3대, 버스승하차장소 1대, 1층 복도 1대, 1층 급식실 앞 계단 1대, 2층 복도 2대, 3층 복도 2대, 강당 2대, 1학년 각 교실 4대 총 21대
3. 추가 설치 가능 장소: 교실, 창의쑥쑥활동실, 블록방, 급식실, 보건실, 수면실, 도서실 등
3.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육부에서는 유치원 교실 내 및 교실 외 실내 공간에 설치하려는 경우 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운영 장소를 동의 (O,X 선택) 해 주세요							
장소	교실	창의쑥쑥활동실	블록방	급식실	보건실	수면실	도서실
동의여부(O,X)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설치 예산 신청함 (교실 내 CCTV 운영 시에는 정보 주체의 100% 사전동의를 받아야 운영 가능)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수집 이용 목적: 설치 목적과 동일 2. 수집 항목: 개인영상정보 3.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일로부터 학년말까지 ※ 본 유치원 영상은 30일 이내 저장 후 자동 삭제가 원칙이며 법령상 필요시 보관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유아의 안전 확인,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 예 ☐ 아니오**	1. 제공받는 자 및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가. 유아의 법정대리인, 교직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안전공제회: 안전 확인 목적 나. 유아의 법정대리인, 유치원 교직원: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 목적 2. 제공하는 항목: 수집 항목과 일치 3.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 목적에 의한 필요 종료 시까지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유아의 안전 확인,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3자 제공 동의 ☐ 예 ☐ 아니오**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따른 안내

-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와 함께 촬영된 귀하(또는 귀 자녀의) 영상이 모자이크 또는 마스킹 처리 없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보주체 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사안별 별도의 제 3자 제공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2조 의한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50조에서는 열람 등 조치를 취할 때, 정보주체의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7조에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 명	반	유아명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다솔유치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일자		점검자	(인)	확인자	(인)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영상정보 보유기간		카메라 대수		카메라 설치위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설비 관련	◦ 영상정보는 정상적으로 촬영·저장되고 있는가?		
	◦ 영상정보 보유기간 대비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은 적정한가?		
	◦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 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카메라의 촬영범위는 유치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유치원 담장 밖 촬영 금지		
	◦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보안 관련	◦ 영상정보가 유치원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제한 없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지정받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는 이상 없이 설치되어 있는가?		
관리 관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는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 없이 부착되어 있는가?		
	◦ 개인영상정보 영상물(열람, 존재확인) 신청서를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는가?		
	◦ 열람 전후에 타인의 영상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를 안내하고 있는가?		
	◦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영상정보 열람,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는가?		
기타 의견			

※ 유치원 여건에 따라 내용 추가 및 삭제 가능

<별지 제3호>

<table>
<tr><td colspan="4">개인영상정보 영상물 (□열람 □존재확인) 신청서</td><td colspan="2">처리여부</td></tr>
<tr><td colspan="4"></td><td>可</td><td>否</td></tr>
<tr><td rowspan="3">청구인
(학부모)
인적 사항</td><td>성 명</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생년월일</td><td></td><td>정보주체와의 관계</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정보
주체
(유아 등)
인적사항</td><td>성 명</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생년월일</td><td></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청구
내용</td><td>청구영상
기록기간</td><td colspan="4"></td></tr>
<tr><td>청구영상
설치장소</td><td colspan="4"></td></tr>
<tr><td>영상청구
목적 및 사유</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6">·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결과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 유치원의 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예시) 유치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외의 사유로 열람을 신청한 경우
함께 촬영된 다른 정보주체 보호조치(혹은 다른 정보 주체의 제3자 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과다한 분량의 요청으로 원활한 유치원 운영에 방해가 되는 경우
다른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열람 거부가 유아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td></tr>
<tr><td colspan="6">「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CCTV영상정보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td></tr>
</table>

<별지 제4호> * 열람 可 통지의 경우

<table>
<tr><td colspan="4">개인영상정보 열람 신청 결과 통지서</td><td>처리여부
可</td></tr>
<tr><td rowspan="3">청구인
(학부모)
인적 사항</td><td>성 명</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생년월일</td><td></td><td>정보주체와의 관계</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정보
주체
(유아 등)
인적
사항</td><td>성 명</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생년월일</td><td></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열람 절차</td><td>열람 일시</td><td colspan="3"></td></tr>
<tr><td>열람 장소</td><td colspan="3"></td></tr>
<tr><td>준비 사항</td><td colspan="3">□ 신분증 지참</td></tr>
<tr><td colspan="5">요청하신 CCTV 영상물 (□열람 □존재확인) 요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다솔유치원장</td></tr>
<tr><td colspan="5">위 청구인은 청구 영상의 정보주체 및 타 원아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이며 비밀을 유지하지 않아 이를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td></tr>
</table>

<별지 제5호> * 열람 좀 통지의 경우

<table>
<tr><td colspan="4">개인영상정보 열람 신청 결과 통지서</td><td>처리여부
좀</td></tr>
<tr><td rowspan="3">청구인
(학부모)
인적 사항</td><td>성 명</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생년월일</td><td></td><td>정보주체와의 관계</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정보 주체
(유아 등)
인적 사항</td><td>성 명</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생년월일</td><td></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열람 불가
사유</td><td colspan="4">□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td></tr>
<tr><td colspan="4">(구체적으로 사유 기술)</td></tr>
<tr><td colspan="5">요청하신 CCTV 영상물 (□열람 □존재확인) 요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에 대해 118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다솔유치원장</td></tr>
</table>

<별지 제6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다솔유치원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형태	담당자	목적/사유	이용.제공 받는 제3자/열람등 요구자	이용.제공 근거	이용.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 예정 일자	파기 등 결과 및 처리 일자	안전 관리 요청 및 결과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8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9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10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은 다음 쪽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교직원용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7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열람 관리대장

다솔유치원

번호	일시	열람요구자	열람 목적 및 사유	열람 자료 특성	확인 결과 및 처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